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2023. 11. 30(목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
기준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3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 정비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
 - 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제명 띄어쓰기 정비

「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

2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)

- 안 제4조제1항제3호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을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으로 정비

- 제4조제2항제3호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적용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약칭: 부동산공시법)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59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
- 제3조(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·평가 및 공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(이하 “표준지공시지가”라 한다)을 조사·평가하고,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·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, 공시기준일, 공시의 시기, 조사·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·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·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,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·특수성,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·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, 신인도(信認度)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(이하 “감정평가법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-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이하 “토지가격비준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(약칭: 감정평가법)

[시행 2023. 8. 10.] [법률 제19403호, 2023. 5. 9., 일부개정]

제5조(감정평가의 의뢰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가 토지등의 관리·매입·매각·경매·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② 금융기관·보험회사·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, 자산의 매입·매각·관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31., 2018. 3. 20., 2020. 4. 7.>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